

DDA 농업협상, 2006년 2월 협상동향

임 소 영*

WTO 회원국들은 지난 2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회의를 가지고 각 분야별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여전히 수출입국간, 선진·개도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델리티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4월 말까지 불과 한 달여를 남겨 놓은 지금까지도 각 그룹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정된 일정 내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다.

1. 쟁점별 논의 동향

WTO 농업위 특별회의 팰코너 의장은 농업주간 전 각 국에 각 분야별 쟁점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업 주간 중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세 분야에 대한 Room F회의(주요국 회의)를 가지고 의장 질문서를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1.1. 시장접근 분야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민감품목의 대우와 특별수입구제조치(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의 대상 범위, 구제조치, 발동기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lsyjr@krei.re.kr 02-3299-4250

미국은 Room F 회의에서 민감품목의 대우에 관한 제안서를 배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모든 민감품목에 대해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최소 TRQ 증량폭을 설정하고, 일반 관세 감축 폭으로 부터의 일탈 정도에 따라 TRQ 증량폭이 커지도록 하였으며 TRQ 증량 한도를 설정하는 등 기존의 제안을 보다 구체화, 공식화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EU는 TRQ 증량 기준으로서 국내 소비량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G-10은 미국의 제안에 따를 경우 관세가 높을수록 TRQ를 많이 증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EU, G-10 등의 수입국들의 반발로 인해 미국은 민감 품목의 TRQ 증량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TRQ 증량 기준으로서 국내 소비량을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제안서를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수입국들의 반발로 논의의 기초가 되지 못하였다.

한편 SSM에 대한 논의에서는 특별품목(SP), 특별수입구제조치(SSM)의 주창그룹인 G-33이 지난 10월에 제시한 제안서가 논의의 바탕이 되었는데, 미국은 SSM에 대해, 품목범위, 발동기준, 구체조치, 기간(SSM 발동기간 및 SSM 존속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관세 감축폭, 특별품목과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호주, 캐나다 등이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EU는 G-33의 제안서를 기초로 향후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SSM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1.2. 국내보조 분야

국내보조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의제들은 국내보조 감축 구간 경계, 블루박스의 추가 규제 설정 여부, 품목 특정 AMS의 상한 설정 기준, 그린박

스 규정의 재검토 여부 등이었다.

펠코너 의장은 질문서에서 AMS 및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 구간 경계를 홍콩 각료선언문에 나와 나온 대로 정해도 될지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캐나다,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홍콩각료선언문에서 보조금 감축을 위한 구간별 국가 배치가 결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국내보조 분야의 핵심 쟁점인 블루박스에 대해서는 G-20과 EU가 블루박스의 추가 규제 마련을 주장하며 미국을 압박하였으나 미국은 신규 블루박스와 관련하여 국내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제안(상한 5%→2.5% 축소)에서 추가적으로 양보(concession)할 수 없다고 대응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품목 간 보조 전이를 막기 위해서 품목 특정 AMS의 상한 설정 기준에 대해 '99-'01 3개년 평균치를 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G-20, EU, G-10은 미국의 주장에 반대하며 UR 이행기간의 평균 또는 올림픽 평균을 상한 설정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기본 골격 합의시 품목 특정 AMS는 과거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린박스에 대해서는 G-20과 캐나다의 제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린박스에 개도국 우대조항을 부여하는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그 밖의 규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수출경쟁 분야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식량원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규율 대상이 아닌 긴급구호 성격의 식량원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와 일반 식량원조의 규제 방식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반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 safe box의 요건인 긴급상황(emergency situation)을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해서 그룹간 의견이 엇갈렸는데 미국은 WTO 차원의 정의를 마련하자는 의견인 반면 다른 국가들은 다른 국제기구의 요청이나 정의에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일반 식량원조에 대해서는 식량원조의 현금화(monetization) 및 재수출에 대한 규율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2. 향후 협상일정

이처럼 그룹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종료하자 남은 기간 동안의 타협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 등 주요 6개국(G-6)들은 각 그룹이 제시한 농업과 비농업 분야의 제안서들을 바탕으로 실질적 관세감축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시물레이션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업주간 중에도 여러 차례 실무급 회의를 가졌다.

주요국들의 분석 결과는 2월 말 경에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위급 회의와 각료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WTO가 다자협상체제이기는 하지만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국가들이 3월 회의 이전에 시장접근분야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따라 3월 협상의 진전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3월 농업주간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3월 회의 이전에 시장접근 분야에 있어 주요국들의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국내보조 분야와 수출경쟁 분야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4월 말에는 모델리티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